

Monthly Tax Newsletter

최신 주요 예규판례 | Issue 90

December 2021

삼성KPMG 세무본부 TKC



목 차

소득법인세 분야

2p

- [심판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경정)
- [심판례] 법인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 관련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청구법인인 쟁점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분양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예규]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예규] 회생계획상의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회생절차는 종결결정되었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채권 잔존 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예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 [예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 여부
- [예규] 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인지 중기법상 중소기업인지 여부
- [예규]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 [예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예규]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 [예규] 퇴직공제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시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재산소비세 분야

8p

- [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법인이 매출액 상당액을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료 보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상중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 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쟁점주식 평가 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경정)
- [심판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당해 가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조사청의 감정평가액 평균액과 청구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액 둘을 평균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 이설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예규] 전기차충전업의 면세사업 여부 등
- [예규]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예규] 대손금액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지방세 분야

13p

- [예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예규]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법인세 분야

[심판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21서1568, 2021. 11. 1.

(사안) 청구법인은 2015.8.11. 특수관계인 소유의 주식("쟁점주식")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최초감정가액보다 저가로 낙찰받고,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경락가액 간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다음,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함.

(판단) 경매법원은 경매물건을 채권담보물로 압류하고 있는 채권단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매각하고 감리 등을 통하여 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므로 경매가액이 최초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매 그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법원에서 정한 입찰가격을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뿐이므로 낙찰받은 청구법인이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시장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매가액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2020.2.11. 개정되어 같은 날 이후 상속개시·증여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를 통하여 그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한 경우 그 경매가액 등을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치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보아 시가에서 제외하나, 동규정은 청구법인이 2015.8.11.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임.

[심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경정)

조심 2020서8450, 2021. 11. 15.

(사안)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인 쟁점모법인의 완전자법인 중 하나인 C사가 2014.12.31. 쟁점모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설립되었으며, 쟁점모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2014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쟁점모법인의 사업소득금액(계약미체결로 자회사들(C사 포함)로부터 미수취한 2014년분 쟁점모법인의 브랜드("쟁점브랜드")에 대한 사용료("쟁점사용료")를 종전 계약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익금산입한 금액)과 C사 및 E사(쟁점모법인의 또 다른 완전자법인)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였음. 청구법인은 2015년에 쟁점브랜드에 대한 재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쟁점사용료를 감액하여 확정된 다음 이를 자회사들(C사 제외)로부터 수취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주위적으로는 감액 확정 후의 쟁점사용료(가령 80원)의 귀속시기를 2015사업연도로 보아 2014사업연도의 감액 확정 전 쟁점사용료(가령 100원) 익금산입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는 감액 확정 후의 쟁점사용료(80원)의 귀속시기를 2014사업연도로 본다면, 2015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사용료(80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2014사업연도 귀속 감액되는 사용료(20원)의 세무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함.

소득법인세 분야

처분청은 쟁점사용료의 귀속시기를 2014사업연도로 보아 2015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는 한편, C사가 2014년에 쟁점모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가 감액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2015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해당 법인세를 환급경정함(주위적 청구는 기각,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 이에 청구법인은 C사가 쟁점모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를 C사의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경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심판청구를 통해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모법인과 C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한 것이어서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처분청으로서 연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연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준부인 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C사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모법인이 2014년에 C 사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익금산입한 이상 C사의 입장에서는 2014년에 쟁점모법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C사의 손금에 산입하여 쟁점모법인의 2014연결사업연도에 대한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판례] 법인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 관련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분양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1서1070, 2021. 11. 1.

(사안) 청구법인은 2009.12.30. A사가 주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8~2016사업연도에 분양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가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의 소에서 패소판결("쟁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에 대해서 2008·2009사업연도의 경우 A사가, 나머지 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에서 빼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쟁점판결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며 위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청구법인은 위 2008~2016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함.

소득법인세 분야

(판단) 법인분할의 경우 불복청구의 당사자 등에 관하여 세법 명문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상법상 분할규정에 따라 그 권리자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이상 분할사업부문과 관련된 환급금수령권 또한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존속법인인 A사는 분할등기 후에는 분할사업부문과 관련된 법인세의 경정·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국심 2002서692, 2003.11.2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A사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0두54098, 2021.2.15.) A사가 경정청구를 제기한 2008·2009사업연도분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한편, 쟁점판결은 당초 분양거래 자체는 취소·해제하지 않고 계약의 본질적 상태는 유지한 채 잘못된 분양금액의 일부만을 감액한 것이어서 당초 세법이 의도한 후발적사유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분양가액이 감액된 부분만을 계약의 해제·취소로 보더라도 쟁점판결의 분양가액 감액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한 청구법인의 위법·부당행위에 기초한 것이임 명백한 이상 이를 부득이한 해제로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이를 후발적사유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소급)경정할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세환급과 함께 국세환급가산금을 덧붙여 받게 되겠지만 거래상대방인 수분양자들 중 상당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 수분양자들이 부담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법인이 국세환급가산금으로 수령하는 결과가 되어 정당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매출은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감소(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대손 등)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보다 세법고유의 손익인식기준(권리무확정주의)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쟁점판결을 원인으로 과거의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은 채 쟁점금액을 쟁점판결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실로 처리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또한 그러한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분양가액 일부 반환액에 대하여 당초 수익으로 인식했던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빼 달라는 청구법인의 법인세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TKC 코멘트]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격이 소멸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이나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함(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예규]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2021. 8. 20.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소득법인세 분야

[예규] 회생계획상의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회생절차는 종결결정되었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채권 잔존 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1, 2021. 8. 2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일도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예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 2021. 8.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TKC 코멘트]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 한편,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단말기 판매업자인 원고가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지급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추가지원금 부분을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서울고등법원2020누47139, 2021.8.18.).

[예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2, 2021. 10. 12.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TKC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매출누락 등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해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도 준비금(손금)으로

소득법인세 분야

추가 인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준비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2019부4287, 2021. 6. 14.).

[예규] 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인지 중기법상 중소기업인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0, 2021. 10.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예규]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서면-2021-법인-4874, 2021. 11. 9.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예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495, 2021. 11. 2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법인세 분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위 이자소득 중 같은 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결국,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게 됨(개인투자자 14%, 법인투자자 25%).

[예규]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03, 2021. 11. 29.

내국법인이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 사업부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을 해당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TKC 코멘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12.20.(측정원가)은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정하고 있음.

[예규] 퇴직공제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시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 2021. 11. 30.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후(최초 지급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추가지급분), 최초지급분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임.

[TKC 코멘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지만, 퇴직공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2015. 12. 15.).

재산소비세 분야

[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사안) 원고는 2005년 7월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와 소외인 명의로 신택한 별건 토지(이 둘을 합하여 “쟁점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9월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별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인 명의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각 예정신고 납부하였고, 2006.2.28. 쟁점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09.1.30. 쟁점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잔대금이 모두 지급된 2006.2.28. 이라는 전제하에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3.2.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사건 처분”).

(판단)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예정신고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별건 토지를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0.6.1.부터 5년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임.

[TKC 코멘트]

·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2010.6.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괄호부분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그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임. 본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이후인 2009.1.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확정신고의 다음 날인 2010.6.1.부터 진행함. 결국, 2017.3.2.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해당 부과제척기간을 5년(일반)으로 볼 것인지, 7년(무신고)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됨. 위 대법원 판단(5년)과 달리 원심에서는 원고가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았음.

재산소비세 분야

[심판례] 청구법인이 매출액 상당액을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보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0전2335, 2021. 11. 25.

(사안) 청구법인은 암호화폐거래소 A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회원에게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거래수수료로 수취하며 거래소의 거래량을 증진할 목적으로 거래 익일 고객의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율의 자체발행한 암호화폐(“이 사건 코인”)를 지급하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20.1.30. 청구법인은 이 사건 코인의 지급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세의 환급을 구하는 행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

(판단) 청구법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상, 고객에게 반환한 이 사건 코인이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이를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코인은 청구법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일정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현금과 동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현재 청구법인의 폐업으로 이 사건 코인 거래가 중단되었음), 청구법인이 거래수수료를 당초 지급한 이 사건 코인으로 지급받는 경우(2차 거래), 그 상당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금액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례]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 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20서8533, 2021. 11. 15.

(사안)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A사가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중간배당금을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배당금전액을 배당하기로 의결하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기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 받은 금액은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쟁점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판단) 쟁점규정에서 “배당 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A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초과배당을 결의한 날(2015.11.20)이라 할 것인데, 쟁점규정에 관한 부칙 제2조는 2016.1.1. 이후 증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2015.11.20. 성립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TKC 코멘트]

· 2021.12.21. 상증법 개정 시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에서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로 변경하였음(‘22.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한편,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여전히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임(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재산소비세 분야

[심판례] 쟁점주식 평가 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경정)

조심 2020중1849, 2021. 11. 10.

(사안) 청구인들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A사의 사주C의 배우자 및 자녀로,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 준공직전에 청구인들이 C로부터 A사의 발행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〇〇원으로 평가하여 과세처분함.

(판단) 쟁점비용(취득세, 농특세, 토지보상금 등)은 모두 쟁점자산의 준공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금액도 비교적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고 지급할 의무가 거의 확정적이므로 부채로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상증세법에 따른 정확한 주식평가라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증여 당시에는 쟁점자산이 준공 직전이었음에도 관련된 수익을 전부 포함(공사진행율 100%)하여 계산하였으므로 관련 있는 쟁점비용도 반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쟁점자산의 가치를 공사원가가 아닌 분양가를 시가로 보아 평가한 부분은 잘못이 없으나, 분양금액에 대응하는 부채인 취득세 등과 분양금액 반환금은 평가기준일 당시 확정된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이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당해 가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21서4871, 2021. 11. 15.

(사안) 청구인은 2012.7.6. 아버지 A가 보유한 B사의 주식(전체 발행주식의 29.94%)을 전부 증여("이 사건 증여주식")받은 후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이후 A가 2019.3.7. 사망하자 이 사건 증여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9.9.29.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아버지 A가 B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1호 가목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였음.

(판단)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A가 B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가업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가 오히려 보다 온전한 가업승계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이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와 1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를 특별히 구분 지어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달리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개정조항(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9항)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가업주식의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동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음.

재산소비세 분야

[TKC 코멘트]

· 쟁점개정조항의 부칙은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쟁점개정조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심판례] 조사청의 감정평가액 평균액과 청구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액 둘을 평균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1서0485, 2021. 12. 6.

(사안) 청구인은 2019.8.8. 부친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쟁점 부동산")을 증여 받아 2019.11.30. 상증법에 따른 기준시가(보충적 평가액)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조사청 및 청구인이 각각 감정기관 2곳에 의뢰하여 받은 것으로서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인정받은 각 감정가액(이하 각 감정가액을 합하여 "쟁점감정가액")을 모두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쟁점조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는 처분을 함.

(판단)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 모두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감정가액 중 청구인의 의뢰분만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의 제2호 본문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을 뿐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각각 감정평가를 받은 것 중 어느 것 만을 평균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2개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아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4개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균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증액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예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 이설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 2021. 11. 30.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의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TKC 코멘트]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등을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법규부가2014-481, 2014. 10. 23.).

재산소비세 분야

[예규] 전기차충전업의 면세사업 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537, 2021. 11. 25.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탁 받은 공단(수탁자) 및 재수탁자가 전기차충전시설 이용자들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을 시(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을 공단(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전기연료의 공급은 부가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예규]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 2021. 11. 22.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를 무상으로 하였다가 재화를 공급받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재화를 반품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반품 운송비를 공급받는 자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부가세법 기본통칙 4-0-1),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부가세법 기본통칙 29-61-2).

[예규] 대손금액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 2021. 11. 22.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추후 이를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부가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TKC 코멘트]

· 20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 2호에 따르면, 회수기일이 2년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금으로서 손금 산입이 가능함(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수정신고일 전 대손이 확정된 미수채권에 대한 수정신고는 적법한 대손세액공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2서3240, 2015. 4. 20.).

지방세 분야

[예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법제처21-0561, 2021. 11. 11.

개정 지특법에서 종전에는 조특법에서 규정하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도록 일원화하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감면 혜택을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부칙 제23조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개정 지특법 부칙에 따른 "종전의 규정"은 조특법 감면규정과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에 대해 조세감면요건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개정 지특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음.

[예규]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21-0624, 2021. 12. 7.

장기간의 임차 후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취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금융리스와는 달리, 이 사안과 같이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단기간의 사용 후 항공기의 반납이 예정되어 있어 법률적·형식적·실질적으로 계속 외국 리스회사가 항공기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바, 이러한 운용리스 방식의 수입까지 「지방세법」 제7조 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으로 간주하고 수입하는 자(임차인)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임.

[TKC 코멘트]

· 2018.12.31. 신설되고 201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봄. 조세심판원은 위 규정의 임차가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금융리스에 한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2019지3527, 2020. 9. 9.).



감사합니다.

home.kpmg/kr



home.kpmg/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